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7. 24 선고 2024가단66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3.

판 결 선 고 2024. 7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[별지 2]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,224,38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6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6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1] ‘청구원인’ 및 ‘변경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김선영

별지